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화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



홍승아<sup>1)</su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ongsa@kwdimail.re.kr

## I. 취업부모의 일과 자녀양육 양립

최근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취업부모(working parents)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취업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지원은 이들의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문제가 1차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자녀양육지원은 아동, 부모, 사회의 각 측면에서 중요한 시대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아동의 측면에서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과 동시에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하는 부모권리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인구를 재생산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각각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 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 현실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출산율 제고, 여성의 취업지속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여 이들의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자녀양육지원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책임하에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지원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발달 및 성장을 지원한다는 자녀양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더불어 부모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의 지원성격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즉 종전의 보육정책이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성장을 중요한 과제로 하였다면, 최근에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으로서, 동시에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호주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호주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및 서비스

### 1) 국가아동발달전략<sup>1)</sup>

호주 정부는 2009년 7월 국가아동발달전략을 수립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대적인 예산투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달성할 정부의 아동지원전략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적인 아동,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부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quality), 이용이 편리하고(accessibility), 적절한 가격으로(affordability)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하에 다음의 8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을 보면, 보육서비스,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연계, 보육교사 지원, 보육 프로그램 질 향상, 보육비 지원, 부모의 취업지원, 아동발달, 취약지역 아동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호주 보육정책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14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살펴본 보육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문제, 적절한 보모 및 보육시설을 구하는 문제, 방학 중 보육문제, 보육비용의 문제, 보육서비스 연계 문제, 특수유구를 가진 아

1) Nation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trategy: Investing in the Early Years

동의 보육문제, 보육시설 입소문제, 양질의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ssells, etc., 2006).

〈표 1〉 국가아동발달전략(2009)

계 획	내 용
보편적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Universal Access for all Children)	2013년까지 매년 5억 3300만 달러 <sup>2)</sup> 를 투입하여 모든 아동에게 주 15시간, 연간 40시간의 서비스 이용을 제공
조기학습 체계구축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보육 및 예비학교 국가표준계획(National Quality for Chilc Care and Preschool)과 연계하여 조기학습 체계를 구축
전국 조기교육 교사 육성전략(National Early Years Workforce Strategy)	4년간 1억 2660만 달러를 투입하여 조기교육 종사인력의 수준과 교사수, 자격을 향상
표준서비스 질 구축	향후 4년간 2220만 달러를 투입하여 보육 및 예비학교 서비스질을 향상
보육비 상환제도의 개정	향후 4년간 1억 6천 달러를 투입하여 보육비 상환수준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증액
JET 보육비 지원	부모의 교육 및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 2390만 달러를 투입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보육비를 확대 지원
조기발달지수 전국적 실시 (Australian Early Development Index, AEDI)	향후 5년간 2020만 달러를 투입하여 호주인의 조기발달지수를 전국적으로 실시
가정통합 프로그램 (Home Integration Program)	향후 5년간 3250만 달러를 투입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아동 및 가족에게 가정교사, 도서, 교육자료 등을 지원

자료: <http://www.mychild.gov.au>

2) 호주달러 기준임

## 2) 호주의 보육비지원정책

호주의 보육비지원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정책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의 보육비지원정책은 취약계층과 중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대상 포괄성을 가지며, 부모의 취업과 서비스 이용을 연계하여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며, 보육서비스와 비용지원을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에서 보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가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 중이거나, 학업 중인 사람들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취업/훈련/학업 테스트를 받아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육급여 시간을 결정받게 된다.

현재 호주의 보육비지원은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와 보육비상환제도(Child Care Rebate, CCR) 두가지로 구성된다. 보육급여는 자산조사에 기반하여 제공되며, 가구 소득과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이용시간과 이용비용이 책정된다. 주당 이용가능 시간은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50시간까지이다. 보육비 상환은 소득수준이 높아 보육급여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 (1)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

보육급여(CCB)는 ① 소득, ②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인증기관인지 등록기관인지), ③ 서비스 이용량, ④ 서비스 이용사유, ⑤ 서비스 이용 아동수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인증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자녀당 주 2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록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최소 주 15시간 이상 최대 주 5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급여적용에서도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어 인증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 등록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율의 보육급여를 받게 된다. 이것은 자연히 수요자들로 하여금 인증보육서비스를 찾게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꾀하는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 보육급여(CCB) 지원내용(2009)

대상	지원내용
모든 부모	연간 50시간 서비스 지원
취업, 훈련, 학업 중인 부모	주 24시간까지 이용가능 (인증보육서비스)
	주 15시간-50시간 서비스 지원 (등록서비스)

자료: <http://www.mychild.gov.au>

보육급여(CCB)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부모들이 보육비용을 낼 때 비용을 감액하는 방법과, ② 연말에 가족지원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많은 부모들이 주로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한다.

〈표 3〉 보육급여액 기준(2010-11): 인증보육서비스

서비스 이용 미취학자녀수	보육급여 최고액 (50시간 기준)	시간당 보육급여 최고액
1명	\$ 184.00	\$ 3.68
2명	\$ 384.55	\$ 3.84
3명	\$ 600.12	\$ 4.00
추가 자녀 1명당	\$ 200.04	\$ 4.00

자료: <http://www.mychild.gov.au>

〈표 4〉 등록보육서비스 이용시 보육급여(2010-11)

등록보육서비스(미취학아동)	2010-11
한 자녀당 시간요율	\$ 0.615
주 50시간 이용시 최대 보육급여(한 자녀당)	\$ 30.75
취학아동의 요율은 미취학아동의 85%임	

자료: <http://www.mychild.gov.au>

(2) 보육비 상환제도(Child Care Rebate, CCR)

만약 소득수준이 높아서 보육급여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비상환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10-11년 기준으로 소득이 연간 \$38,763 이하이면 보육급여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급여는 자녀수에 따라서도 달리 책정된다. 단, 보육비상환제도는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등록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 5〉 보육비상환(Child Care Rebate, CCR) 기준(2010-11)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수	소득기준
1명	\$ 134,443
2명	\$ 139,333
3명	\$ 157,329
추가 자녀 1명당	\$ 29,721

자료: <http://www.mychild.gov.au>

(3) 이원화된 보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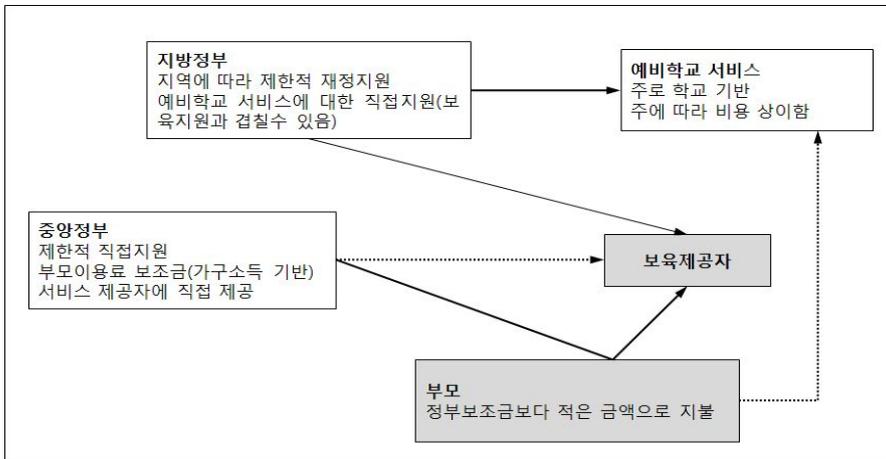
또한 호주의 보육시설은 인증서비스와 등록서비스로 이원화되어 있다. 인증서비스란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과 운영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이 되며, 인증대상 보육서비스는 종일 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방과전, 방과후, 휴교일 보육 등), 일시보육(Occasional Care), 재가서비스(In Home Care) 등이다.

등록서비스란 조부모나 친인척, 친구, 부모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예비학교(preschools), 유치원(kindergartens),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등이 포함된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관할 가족지원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서비스 이용시 등록보육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보육은 보육급여제도에는 해당되지만 보육비상환제도(Child Care Rebate)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록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수준이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보육재정

호주의 보육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지원되고 있다. 재정지원의 큰 규모는 연방정부에서 나오고 이들은 주로 공식보육시설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나 지역의 교육부서에서는 예비학교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지만, 만약 보육시설에서 4세아 이상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여기에도 재정지원이 된다.

공식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은 주로 이용자 보조금, 세금지원으로 제공되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상황이 고려된다. 재정지원은 부모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주로 운영비나 프로그램지원비가 제공되는데, 이 역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자료: OECD(2002)

[그림 1] 호주의 보육재정 흐름도

### 3. 시사점과 향후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호주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보육정책의 목표설정을 아동발달과 부모의 취업지원이라는 두가지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사례는 보육정책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조기아동기 발달을 위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골격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이용자격을 부모의 취업, 직업훈련, 학업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도 보육서비스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sup>3)</sup>

둘째, 보육정책을 하나의 별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아동보건정책과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 도입된 보육급여제도(Child Care Benefits, CCB)의 시행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육급여의 수급자격(Entitlements)을 부모의 취업, 가구소득, 자녀수, 이용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시설의 인증 및 등록상태, 아동의 예방접종 상태 등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보육비지원정책을 여타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있다.

셋째, 보육비지원과 보육시설을 이원화하여 정책 수혜층의 저변을 넓히되 차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비지원의 이원화는 일정한 소득 상한선 이상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보육비상환제도(Child Care Rebate, CCR)를 제공하여 수혜층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육급여의 제공을 보육서비스의 인증 및 등록상태와 연계시켜서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서도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을 보육정책의 주요 목표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정책의 핵심분야인 보육비지원정책도 부모의 취업과 연계시켜 보다 세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비지원정책의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과 연계시키는 정책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영국의 경우에도 보육서비스의 이용을 부모의 취업과 연계시켜 지원하고 있는데, 영국의 주요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인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s)내 “부모가 주 16 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보육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의 취업 및 질병상태 “로 우선대상으로 설정하여 취업모 중심의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다(홍승아외, 2010).

###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진미정 (2010).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의 해외 사례연구」. 여성가족부
- 홍승아·김은지·이영미 (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assells, R. J. McNamara, R. Lloyd, A. Harding(2005). "Perceptions of Child Care Affordability and Availability in Australia: what the HILDA Survey tells us". Paper presented at the 9th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Conference, Melbourne. 10 February 2005
- OECD (2002).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ECD
- 호주 정부 사이트 [www.mychild.gov.au](http://www.mychild.gov.au)